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위성곤・박지원・한정애

서영교・허 영・주철현

진성준 • 박희승 • 문대림

이소영 · 강유정 · 김한규

정진욱 • 유건영 • 오세희

조인철 • 박수현 • 양부남

박지혜 • 김성환 • 임미애

위성락 · 민형배 · 박정현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는 「하천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 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을 촉진하고 있음.

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 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 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 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.

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

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 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). 법률 제 호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333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6.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 전단 중 "등의"를 "·수열에너지사업 등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333호 하천법 일부개정	법률 제20333호 하천법 일부개정		
법률	법률		
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③	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③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	4		
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6.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에 관		
	<u>한 사항</u>		
<u>6.·7.</u> (생 략)	<u>7.·8.</u>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		
	같음)	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		
제50조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 ①	제50조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 ①		
생활・공업・농업・환경개선・			
발전·주운(舟運) <u>등의</u> 용도로	<u>·</u> 수열에너지사업		
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	<u>등의</u>	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			
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			
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			
다.			
② ~ ⑪ (생 략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		